

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안내문



- **관련법규** :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등에 관한 고시 제8조(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조사) 및 소방시설법 제22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)
- **기 간** : 2026. 10. 13.(화) ~ 10. 14.(수) <사전 일정 조율 완료>
- **대 상** : 자체점검 실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- **조 사 자** : 3명(자체점검1, 화재안전조사2)
- **조사내용**
 - 관계인(관리업체) 자체점검의 적정성 여부
 - 소방시설, 피난·방화시설 유지·관리 여부 등
 - 2024년 1월 변경된 소방계획서 작성 실태 및 자체점검 서류 등 관리 여부
 - 이행완료보고서 제출 대상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 여부
- **조치사항**
 - 불량사항은 조치명령서 발부
 - 과태료 및 형사입건 등 의법조치
 - *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(소방펌프 미작동 등)
 - *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(수신반 전원 차단, 소방펌프 밸프 폐쇄 등)
- **준비사항**
 - 소방안전관리자 수첩
 - 소방계획서(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표 등)
 -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
 -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점검표 및 보고서 사본
- **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(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)**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(태풍·홍수)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
 - 관계인이 질병, 장기출장 등으로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
 -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, 교육·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필요한 장부·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(領置)되어 있는 경우